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27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2월 26일

제안자 : 교 육 위 원 장

I. 수정이유

- 용어를 정비하고 교육지원청별 심사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명확히 함.

II. 주요내용

-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계획서로 함(안 제4조의2 조명).
- 교육지원청별 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을 명확히 함(안 제6조제1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의2 조명 중 “공무국외활동계획서”를 “공무국외여행계획서”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 중 “교육감이”를 “교육감(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)이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u><신 설></u>	제4조의2(<u>공무국외활동계획서</u> 제출 등) ① ~ ③ (생략)	제4조의2(<u>공무국외여행계획서</u> 제출 등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.</u>	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<u>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 1. ~ 2. (생략)	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<u>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교육감(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)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 1. ~ 2.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공무국외여행계획서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등)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, 결과 보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국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.

③ 교육감은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.

제6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을 삭제하며, 제4항부터 7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.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교육감(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)

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(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)
2.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명

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]

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(제5조 관련)

항목	심사기준	예	아니오
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	1. 공무국외활동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?		
	2.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활동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?		
	3. 방문국의 사회, 문화, 관습 및, 감염병 발생, 활동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?		
	4.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,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?		
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	1.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?		
	2.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활동 여부 및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?		
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	1. 국외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?		
	2.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?		
	3. 국외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?		
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	1. 국외활동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?		
	2.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		

	산출되었는지?		
	3.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?		
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	1.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? 2. 숙박, 통역,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?		
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	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?(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)		
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	1. 기관 방문,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,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?		
	2.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?	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공무국외여행 신청·허가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무국외여행을 신청할 때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.</p> <p>1. <u>여행계획서</u>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공무국외여행 신청·허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공무국외여행계획서</u>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4조의2(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등)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과 그 결과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최 계획만 포함하고, 결과 보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국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.</u></p> <p><u>③ 교육감은 제출받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</u></p>

제5조(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(생략)

②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7. (생략)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5조(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교육감(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)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1.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(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)

2.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소속으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명

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(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장)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외부위원은 6명으로 한다.

1. 예산부서의 장 및 인력개발 부서의 장, 공무국외여행 관련 업무부서의 장

2. 공무국외여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

3. 그 밖에 교육감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

④ ~ ⑦ (생략)

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삭 제>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[별표]

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(제5조 관련)

항목	심사기준	예	아니오
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	1. 공무국외활동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?		
	2.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활동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?		
	3. 방문국의 사회, 문화, 관습 및, 감염병 발생, 활동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?		
	4.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, 국외활동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?		
국외활동 목적과 국외활동 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	1.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?		
	2.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활동 여부 및 향후 다른 활동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?		
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	1. 국외활동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활동자 선정이 적합한가?		
	2.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·개인이 활동에 포함되었는가?		
	3. 국외활동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활동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?		
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	1. 국외활동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?		
	2.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?		
	3. 타 기관으로부터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?		
국외활동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	1.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?		
	2. 숙박, 통역,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활동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?		
국외활동 준비의 내실성	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?(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)		
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	3. 기관 방문,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활동 내용을 활동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,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?		
	4. 공무국외활동 결과 및 노하우를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?		